

## 1. 목적

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용어의 정의

- 1) 협력업체: 회사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여 회사와 제조, 용역 위탁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업체를 의미한다
- 2) 우수협력업체 : 협력 업체 중 정기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협력업체로 인증된 업체로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를 의미한다.
- 3) 잠재업체 : 회사와 거래는 하고 있지 않으나 신규로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등록된 거래 희망업체를 의미한다
- 4) 등록업체 : 잠재업체 중 회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신규거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
- 5) 협력업체선정 :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6) 협력업체운용 :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,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/기회부여, 등록취소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
## 3. 협력업체선정, 운용 실천사항의 운영

- 1) 협력 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  - 가.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포함)심사개시30일전(사업장, 전자매체(웹사이트) 등에 15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  - 나.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 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e-mail 대체)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  - 다.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,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- 2)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  - 가.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3) 업체등록 평가항목 및 배점
  - 가. 아래의 내용을 평가항목/배점으로 산정한다.
    - 재무(40점) : 유동비율, 부채비율, 규모비율, 신용등급
    - 품질/신뢰도(40점) : 허가등록 여부, 품질관리 인증서보유현황, 기술자보유현황, 산재이력
    - 거래실적(20점) : 당사 거래실적, 해당업종 경력, 타사 거래실적
- 4) 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를 부여한다.
  - 가. 협력업체로 선정,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,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.

- 5)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을 구현한다.
- 가.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, 전자매체 등에 15일이상 공개한다.
- 6) 협력업체 등록/취소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.
- 가. 등록/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.
- 7) 협력업체 등록/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- 가. 등록취소기준
- 부도, 폐업, 면허 취소 또는 파산 업체
  - 산업 안전보건법상의 중대 재해 유발업체
  - 윤리 강령을 위반하여 거래유지가 부적절한 업체
  - 중대 품질문제를 야기하여 회사의 유/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
  - 유사 동종 업체를 선동하여 담합 등 입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
  - 어음, 수표 등이 거래 정지된 경우
  -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,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에 대해 가압류, 가처분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및 파산 또는 회사정리 개시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
  - 거래품목을 반복적으로 지연 납품하거나 확정된 발주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
  - 법규 위반 사실이 있거나 하도급 분쟁 사례 등 하도급 질서의 위반 또는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나.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해야 하고, 해당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,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8.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.

## 부칙

이 실천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